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1994. 12

鄭圭燮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본 연구의 目的은 남북관계 개선 및 궁극적인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對南政策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이 그간 추진해 온 대남정책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金正日體制의 대남정책은 어떠한 양상을 띠는 것인지를 전망하려는 것이다.

1. 對南政策의 展開와 現況

정권수립 이후 한국전쟁시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은 民主基地論에 입각하여 북한내 기지건설을 우선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은 1949년 6월 2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선언을 통해 「전조선적인 자유총선거」를 제의하는 한편,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등을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韓國戰爭은 명백히 武力에 의한 통일시도였다.

북한은 정전 이후 민주기지를 견지하면서 平和統一 제안과 남조선혁명을 고무하는 二重戰略을 계속 추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평화공세는 북한이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과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을 추진하면서 달성한 經濟力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軍事政府 수립 이후 1962년 12월 經濟建設과 國防建設 병진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1964년 2월에는 「3대 혁명역량」 방침을 수립하여 統一戰略을 체계화시켰다.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이 수립된 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남조선혁명) 戰略의 基調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정권의 전복이라는 전략목표하에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에 입각한 對南包圍攻勢의 전개와 더불어 혁명정세가 성숙되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다면, 남한내 民衆蜂起 또는 북한이 지원하는 戰爭의 방법으로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대남전북전략을 견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대남강경정책 및 평화공세를 구사하는 한편, 통일방안으로서는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혁, 비동맹 국가들의 탈이념화,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등 국제환경 변화와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體制維持에 최대의 역점을 둘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南北共存 모색과 통일전선전술 강화라는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 입 및 「기본합의서」 채택·발효에 호응한 것은 吸收統一을 우려하여 남북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예이다. 반면에 김일성이 1990년 5월 「민족적 통일전선의 형성」을 재강조한 이래,

북한은 다원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족대단결」이라는 명분하에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二重的 對南政策은 1993년 4월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집대성되었다. 즉 「10대강령」은 남북공존 도모, 적대정책 중지, 상대방 흡수 배제 등 남북공존을 통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반공정책 포기, 창구다원화 요구 등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은 「10대강령」을 통해서도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견지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 이후 南北對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美國과의 直接協商을 통해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문제 전반에 관해 정치적 타결을 도출하려는 「主 대미회담, 從 남북대화」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사망 직전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여 이같은 전술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2. 南北關係 現況

남북한은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이래 1992년 2월 19일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화해·공존관계를 제도화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은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까지 12개의 문건을 채택·발효하는 한편, 고위급회담 이외에 3개 분과위, 핵통제공동위, 4개 부문별 공동위, 남북연락사무소, 2개 실무협의회 등 총 12개 協議機構를 구성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한 채 북한 핵 문제가 국제문제로 부각되자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주력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는 바, 남북 당국간 대화는 1993년에 들어 특사교환을 협의하기 위해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만이 이루어졌고, 1994년에 5차례 개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南北頂上會談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되고 남북당국간 회담 역시 동결되었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따라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면서 198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었던 남북간 인적 및 경제 교류 역시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委託加工交易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推進 影響要因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첫째, 정치·사회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당중심의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띠더라도 體制維持의 관성상 외형적으로는 首領論에 입각한 「김정일 유일체제」를 표방할 것이며, 이미 전개해 온 김정일 우상화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 유일체제 구축 및 개인의 우상화는 폐쇄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카리스마도 부족한 김정일이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남한이라는 통일의 상대방과 社會開放을 초래할 전면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이 폐쇄사회로 유지되는 한 어떠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체제의 성격상 김정일정권은 기존 對南政策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남북화해·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북한 경제는 1993년 1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하였음을 공식 인정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 있으며, 북한은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미 南北交易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 바, 南韓企業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김정일체제의 대외정책의 초점은 주변4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두어질 것이다. 결국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體制保障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실리획득으로 경제난 해소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까지는 상대적으로 南韓과의 관계증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4. 對南政策 推進方向

김정일정권은 대남·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통일3원칙」과 「10대강령」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정치·사회체제의 성격상 기존 對南政策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二重戰略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실천과 같은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기본합의문 이행을 통한 대미 관계개선 및 정권공고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나마 南北對話에 호응하여 남북관계 진

전을 표방하는 한편, 경제난 해소를 위해 南韓企業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유지와 표리관계에 있으며 唯一閉鎖體制가 유지되는 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시대에 설정된 대남정책의 논리와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세적 입장에서 南北共存을 制度化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①남북평화협정 체결 의사 표명, ②남북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 방안, ③상호 체제 인정 및 남북공존 천명 등으로 예상된다.

5. 結論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망되고, 북한 핵문제의 과거가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일본의 국교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처해 한국은 첫째, 對北政策의 基本 目標를 「남북화해·협력체제 구축」→「남북연합」구성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정치적 신뢰구축」→「교류 협력활성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한국은 이러한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一貫性을 유지하고, 南北共存을 통해서만 북한체제의 존속이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한민족 전체의 공존공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정책은 대외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對外次元에서는 주변4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주변4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대내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國論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동시에 통일국가의 未來像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對南政策 및 南北關係 現況	4
1. 對南政策의 展開와 現況	4
가. 展開過程	4
나. 現況 및 特徵	20
(1) 二重性: 南北共存과 統一戰線戰術	20
(2) 「主 對美協商, 從 南北對話」戰略	27
(3) 聯邦制 統一方案 堅持	32
2. 南北關係 現況	35
가. 當局間 會談	35
나. 南北交流	44
第 III 章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49
1. 政策推進 影響要因	49
가. 政治·社會的 要因	49
나. 經濟的 要因	61
다. 體制外的 要因	69

2. 政策推進 方向	73
가. 二重的 對南政策 持續	73
나. 守勢的 共存戰略으로의 轉換	84
第Ⅳ章 結 論.....	87
參考文獻.....	90

表 目 次

〈도표 1〉 남북간 기구와 합의서	39
〈도표 2〉 남북한 주민의 상호 방문(1989.6~1994.10.31) ...	45
〈도표 3〉 남북주민간 접촉(1989.6~1994.10.31)	46
〈도표 4〉 남북교역 규모	48
〈도표 5〉 위탁가공교역 승인 현황	48

第 I 章 序 論

남북한은 1992년에 들어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당국간 합의서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등 12개 文件을 채택·발효하는 한편, 총 12개의 協議機構를 구성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남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한 채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南北對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한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對北政策의 초점을 둠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6월 김일성이 南北頂上會談을 전격 제의하고, 남한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되었으나,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한편 北韓은 현재 사회주의권의 와해,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 등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경제난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가 소멸된 상황으로 인해 體制維持에 최대의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도대회 이후 김정일이 공식

에 등장하지 않아 金正日을 둘러싸고 건강이상설, 권력투쟁설 등이 난무하였으나, 10월 16일 개최된 김일성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에 김정일이 참석한 이후 공개활동을 재개함으로써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켰다.

김일성 사망 이후 1994년 10월 21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결과 北韓 核問題가 일단 타결됨으로써 미·북한간 관계개선이 가시화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은 오히려 對南誹謗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目的은 남북관계 개선 및 궁극적인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對南政策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이 그간 추진해 온 대남정책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金正日體制의 대남정책은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지를 전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정권수립 이후 북한이 전개해 온 대남정책의 주요 내용을 개관한 후, 1980년대 말 이후의 現況 및 特徵을 분석하는 한편, 남북당국간 회담 및 교류의 진척상황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우선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要因들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影響要因 및 남북관계 현황, 그리고 김일성 사후 북한이 천명하고 있는 대남정책 방향 등에 입각하여 향후 김정일체

제의 대남정책 推進方向을 전망한다.

본 연구의 結論에서는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을 감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對北政策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II 章 對南政策 및 南北關係 現況

1. 對南政策의 展開와 現況

가. 展開過程

政權樹立 이후 북한의 對南·統一政策은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내각수상 김일성이 발표한 政府政綱의 첫번째 항에서 최초로 표명되었으며, 그 핵심 내용은 외국군대의 철수였다.¹⁾ 정권수립 이후 한국전쟁시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은 民主基地論에 입각하여 북한내 기지 건설을 우선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은 1949년 6월 28일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선언을 통해 「전조선적인 자유 총선거」를 제의하는 한편,²⁾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등을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1) 정부정강에서 북한은 “全朝鮮人民들을 政府周圍에 튼튼히 團結시켜 가지고 統一된 民主主義自主獨立國家를 急速히 建設하기 爲하여 全力을 다할 것이며 國土의 完整과 民族의 統一을 保障하는 가장 切迫한 條件으로되는 兩軍同時撤去에 대한 蘇聯政府의 提議를 實踐하기 爲하여 全力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명시하였다.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49」(평양: 朝鮮中央通信社, 1949), p. 45.

2) 「朝鮮中央年鑑 1950」, p. 234.

그러나 韓國戰爭은 명백히 武力에 의한 통일시도였다.

북한은 정전 이후에도 민주기지를 계속 견지하면서 平和統一 제안과 남조선혁명을 고무하는 二重戰略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4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라는 테제를 통하여 民主基地 建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할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진전시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³⁾

김일성은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平和統一에 관해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소집, 남북간의 접촉추진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쌍방군대의 최소한 축소, 외국군대철수, 남북한 정부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 소집 등을 제의하였다.⁴⁾ 또한 김일성은 1957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 연설, 1960년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보고, 1962년 10

3)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9), p. 138.

4) 위의 책, pp. 140~150.

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의 연설 등을 통해 聯邦制, 남북평화협정 체결, 군대축소, 경제문화교류 제의 등 적극적인 對南平和攻勢를 전개하였다.⁵⁾ 이러한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는 북한이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과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을 추진하면서 달성한 經濟力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며,⁶⁾ 특히 1960년 8월에 제시한 남북연방제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유동적인 남한 정세를 활용하고자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軍事政府 수립 이후 1962년 1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아래 經濟建設과 國防建設 병진정책을 채택하는 한편,⁷⁾ 김일성은 1964년 2

5)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Ⅱ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pp. 71, 649~793;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63」, pp. 33~34.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남북총선거 불가능시 통일 이전의 過渡的 對策으로서 南北聯邦制를 최초로 제의하였다. 이 남북연방제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의 현존 정치제도 존속, 양 정부의 독자적 활동 보장, 양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에서의 남북 경제·문화발전의 통일적 조절 등이다.

6) 예를 들어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3개년계획 기간에 20.6%,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21.0%에 달하였다.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p. 145.

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는 결론을 통해 “북조선 혁명력량, 남조선 혁명력량, 국제적 혁명력량”강화라는 「3대 혁명력량」 방침을 수립하여 統一戰略을 체계화시켰다.⁷⁾ 남조선 혁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김일성이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남조선 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나라

7) 「조선중앙년감 1963」, p. 159;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594~595.

8) 3대혁명역량 중北韓의 혁명역량은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의 강화를 의미하고,南韓에서의 혁명역량은 혁명의 주력군형성, 당과 지도부의 강화, 統一戰線의 조직, 반혁명역량의 약화를 말한다. 國際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사회주의인민들과의 단결,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인민지와 단결강화, 신생국·중립국과의 관계개선, 반미입장의 지지획득, 反美人民들과의 단결·지지, 우방에 겸손하게 대하는 것, 반드시 수정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등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77~96;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226~227.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을 하여야 한다.⁹⁾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이 수립된 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남조선혁명)戰略의 基調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정권의 전복이라는 전략목표하에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에 입각한 對南包圍攻勢의 전개와 더불어 혁명정세가 성숙되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다면, 남한내 民衆蜂起 또는 북한이 지원하는 戰爭의 방법으로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북한은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1968~1969년에 걸쳐 청와대기습, 울진·삼척지역에의 무장계렬라 침투, 푸에블로호 나포, EC-121기 격추 등 對南強硬路線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행한 보고에서 “남조선 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

9) 「조선중앙년감 1966-1967」, p. 31.

10)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46~270.

켜야 합니다”¹¹⁾라고 언급하여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는 北韓體制로의 韓半島統一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목표는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조에도 명시되었다.¹²⁾

그러나 1969년 7월 닉슨독트린 발표와 미·중, 일·중 화해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南北韓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南北對話가 이루어져 1972년 7월 4일에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3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¹³⁾ 「7.4

1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71」, p. 32. 김일성은 이 보고문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적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의 투쟁방법을 옹기 결집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하여 남조선혁명을 고무시켰다.

12) 사회주의 헌법 제5조의 내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이다.

13) Young Whan Kihl, “Korean Response to Major Power Rapprochement,” in Young C. Kim, ed., *Major Powers and Korea* (Silver Spring, Maryland: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 pp. 139~164; Chae-Jin Lee, “South Korea: The Politics of Domestic-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1972년 8월 30일 南北調節委員會가 설치되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가 논의되고,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南北關係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통일문제에 대한 쌍방의 접근방법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특히 김일성은 1972년 9월 17일 「每日新聞」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통일3원칙」에서 自主原則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외세의 간섭배제이고, 平和統一原則은 남한의 군사시설 보강, 장비현대화, 군사연습 중지이며, 民族大團結은 남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의미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北韓式 統一의 3대원칙으로 체계화하였다.¹⁴⁾ 또한 김일성은 1973년 6월 23일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실현,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사회단체의 대민족회의 소집, 단일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시, 단일 국가로 유엔가입 등 「조국통일5대강령」을 공표하여 南韓의 共存政策¹⁵⁾을 거부하고 「하나의 조

Foreign Linkage,” *Asian Survey*, vol. XIII (January 1973), pp. 94~101 참조.

14) 「김일성저작선집 6」 (1974), pp. 287~289.

15)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7개항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특별성명」을 통하여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政治實體로 인정하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관계 정립을 천명하였다.

선」 논리를 강조하였다.¹⁶⁾

1973년 8월 8일 김대중납치사건 이후 북한은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성명을 통하여 대화상대 교체, 「6.23 선언」 취소와 한국의 반공법·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함으로써 남북조절위와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는 점차 소강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美國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하는 한편,¹⁸⁾ 땅굴 굴착,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사건 등과 같은 對南強硬政策으로 선회하였다.¹⁹⁾

또한 이 선언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共存政策을 공식화하였다. 이 선언의 전문은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5」(서울: 대통령비서실, 1976), pp. 109~111 참조.

- 16) 김일성,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조선중앙년감 1974」, pp. 52~58; B. C. Koh, “North Korea: Old Goals and New Realities,” *Asian Survey*, vol. XIV, no. 1 (January 1974), p. 38.
- 17) 적십자회담은 실무자회의로 격하되어 1977년 12월까지 총 25차례 진행되었으나 성과없이 끝났고,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은 부위원장회의로 진행되었으나 1975년 5월 북한이 무기 연기를 통보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직통전화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 직후인 8월 30일 단절되었다.
- 18) 이 편지의 전문은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Ⅲ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pp. 857~859.

한편 1979년 10월 26일 유신체제 붕괴 이후 19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10차례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으며,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 보고문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이 보고문을 통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통일3원칙으로 설정하고, 사상·제도를 상호 인정·용납한 기초 위에서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地域自治를 실시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구성하기 위하여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 및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연방제 통일 후 실시할 정책방향으로서 10대 施政方針을 제시하였다. 다만

19) 북한의 對南政策 목표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예는 1974년 11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비무장지대 내에서 3개의 땅굴이 발견된 사실이다. 또한 베트남의 共産化가 임박한 시점인 1975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환영연회에서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일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강경노선을 반영하는 예이다. 「조선중앙년감 1976」, p. 53. 판문점 사건에 대해서는 John K. C. Oh, “South Korea 1976: The Continuing Uncertainties,” *Asian Survey*, vol. XVII (January 1977), pp. 74~75 참조.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권의 교체, 보안법 폐지, 對美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 先決條件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²⁰⁾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 11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회의 제의와 1981년 8월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제의 등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경주하는 한편, 1983년 10월 랭군폭파사건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미국·한국과의 3者會談 개최, 對美 平和協定 체결,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의하였고, 동년 3월 30일에는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대표단 회담을 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1984년 9월 8일 북한적십자회를 통하여 한국의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쌍방 적십자사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다방면에 걸친 남북대화·접촉이 재개되었으나,²¹⁾ 북한이 1986년도 팀스피리트훈련

2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조선중앙년감 1981」, pp. 52~61 참조.

21) 1984년 11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에 經濟分野 會談이 개최되어 1985년 11월까지 5차례 진행되었고, 남북적십자본회담은 중단 12년만인 1985년 5월 재개되어 12월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1985년 9월 20일에는 151명으로 구성된 「남

을 이유로 1986년 1월 20일 모든 남북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재차 전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86년 12월 30일 「북남고위급 정치회담」 개최 제의,²²⁾ 1987년 7월 23일 「조선반도에서 단계적 다국적 무력감축 협상」 제의²³⁾ 등 平和攻勢를 취하는 한편, 1987년 11월 남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항공기를 격추하는 테러를 감행하였다.

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라는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인적 교류가 성사되었다. 이와 함께 1985년 7월과 9월에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이 2차례 이루어졌으며, 동년 10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재하에 남북체육회담이 한차례 개최되기도 하였다.

- 22) 김일성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통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이 회담에서의 協議事項으로는 ①비방중상 중지 및 다방면적인 합작·교류의 실현을 통한 민족적 유대 도모 등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대책, ②무력축소, 군비경쟁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등 긴장완화 조치, ③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 제고 대책 및 비무장지대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중립국감시군 조직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 23) 북한은 1987년 7월 23일 정부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감축협상」을 제의했으며,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병력의 단계별 축소후 1992년부터 10만명 이하의 병력 유지,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철수, 군사기지 철폐, 군축현황의 상호통지, 평화지대 건설, 다국적군축협상 제안 등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실용주의화, 가중되는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남북공존 및 평화문제를 강조하면서 남북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高位級會談 개최에 호응하는 한편,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南北共存에 관해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빨려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²⁴⁾라고 언급하여 해방 후 최초로 南北韓 共存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경쟁체제를 共存體制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²⁵⁾ 또한 김일성은 1989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존의 원칙」을 강조하였다.²⁶⁾

24) 「로동신문」, 1989년 1월 1일.

25) 이러한 해석은 이정식, “공존과 혁명과 통일논의,”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245 참조.

26)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

둘째, 平和問題에 관해 북한은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 제의에서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平和保障 4原則과 함께 포괄적인 平和方案으로 ①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군무력의 단계적 철수,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남북한과 미국의 3者會談을 제시하였고, ②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그리고 고위급정치 회담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북한은 1988년 12월 남한 정부의 總理會談 제의에 호응하였으며, 남북한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하여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넷째, 統一戰線戰術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1989년 “신년사”

다.”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 29.

를 통해 연방제통일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급인사들의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였으며, 동년 3월 북한의 정당·단체 연합회의는 민간급 대화의 발전에 대한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에서 남북의 자유왕래 실현 및 全面開放을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대표들의 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²⁷⁾

이러한 북한의 對南政策은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통해 「조국통일 5개 방침」으로 체계화되었다. 이 내용은 ①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 마련, ②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 실현, ③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 ④조국통일을 위한 대화 발전, 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형성 등이다.²⁸⁾

「조국통일 5개 방침」을 발표한 이후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吸收統一을 우려하여 「남북공존」을 수용함으로써 體制維持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9월 유엔 동

27)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595.

28) 「로동신문」, 1990년 5월 25일.

시가입, 1992년 2월 「기본합의서」 채택·발효 등에 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있다.²⁹⁾ 또한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된 헌법 제9조에서 1972년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였다.³⁰⁾

그러나 북한은 多元的인 한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統一戰線戰術의 적

29) 북한은 獨逸統一이 실현되자 남한에 의해 吸收統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최근 다른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2년 7월 4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그들은 (남조선당국자)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으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게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라고 지적하여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30) 1992년 4월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전문은 「조선중앙년감 1993」, pp. 140~150 참조.

극 추진이라는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통일전선전술 강화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1년 1월 25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 본부를 결성하여 1990년 11월 20일 결성된 「범민련」을 지원하는 한편, 범민족대회추진 등을 통해 한국 정부와 재야운동권의 갈등을 유도하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성사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의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통하여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³¹⁾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南北對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對美 直接 協商을 통해 核問題를 비롯한 韓半島의 평화·안정·통일문제 全般에 관해 정치적 흥정을 도모하고 있다.

31)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나. 現況 및 特徵

(1) 二重性: 南北共存과 統一戰線戰術

북한은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를 개최하여 김일성이 작성하였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10대강령」의 채택이 “우리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에 대해 외세의존정책의 포기과 미군철수 의지 표명,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 중지 및 미국의 核雨傘으로부터 벗어날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³²⁾

「10대강령」을 채택한 이래 북한의 對南政策은 이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바, 그 내용과 내포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32) 「로동신문」, 1993년 4월 8일.

(가) 「10대강령」의 內容

「10대강령」은 기존의 민족대단결론이 선언적이고 원론적인데 비하여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민족대단결의 ①공극적인 목표, ②이념적 기초, ③단결의 원칙 및 방법 ④통일 달성을 위한 근본문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0대강령」에서 제시된 민족대단결의 공극적인 目標은 제1항의 자주·평화·중립적인 통일국가 창설이다. 즉 남북한은 현존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모든 민족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統一國家의 形態는 남북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이며, 통일국가의 성격은 자주·평화·비동맹의 독립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민족대단결의 理念的 基礎는 제2항에서 제시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이며,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배격이 강조되어 있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原則은 제3항에서 제시한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구체적 방법은 ①남북의 사상·이념·제도 인정·존중과 불간섭을 통한 진보와 번영 추구, ②전민족적 이익 도모, ③통일 노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등이다.

넷째,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내용은 강성산의 보고에서

언급된 것처럼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제4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대결 추구 및 조장 중지, ②모든 형태의 정쟁 및 비방·증상중지, ③상호 적대정책 중지, ④외세의 침략·간섭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이다.

다음으로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는 제5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상호 불위협·불침략, ②자기의 제도 불강요 및 상대방 吸收排除 등이다.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제6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統一論議와 활동의 자유 보장, ②정치적 반대파 탄압·보복·박해·처벌 금지, ③친남·친북 불시비, ④모든 정치범 석방 복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제7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국가적·협동적·사적 소유 인정, ②개인 및 단체의 자본·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 보호, ③제분야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자격 인정 및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 계속 보

장 등이다.

“접촉·래왕·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는 제8항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접촉·래왕의 장애물 제거 및 차별없는 래왕의 門戶 開放, ②각당·각파·각계각층에 동등한 對話의 기회 제공 및 쌍무적·다목적 대화 발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連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제9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북과 남, 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북과 남, 해외의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제10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 및 그 후대에게 특혜 제공, ②과거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과거를 뒤우치고 애국의 길로 나서면 광명으로 대하고 공로에 따라 공정히 평가할 것 등이다.

(나) 「10대강령」에 나타난 對南政策

「10대강령」에서 나타나는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은 남북공

존 모색과 통일전선전술의 지속 추진이라는 二重性이나, 북한은 이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 「10대강령」은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기존 二重的 對南戰略의 연장선상에서 발표한 것으로 民族主義³³⁾ 또는 민족대단결 개념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10대강령」을 先提示함으로써 민족주의 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남정책 정당화를 도모하는 한편, 남한내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4개 대남 요구사항」에 대한 태도 표명을 촉구한 것은 북한이 민족주의 개념의 정서적·이념적 당위성을 이용하여 남한으로 하여금 명분상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유인하는 한편, 남한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제6항의 내용은 남한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33) 북한이 民族主義를 강조한 주요 예로는 김정일이 1986년 7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들 수 있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내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7」, p. 165.

반공정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관한 남한내부의 國論分裂을 유도하려는 것이며, 제8항의 내용은 창구다원화 및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을 주장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9항의 내용은 해외교포 및 친북성향 인사·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대남 범민련 허용 요구 및 친북단체의 활동 강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10항의 내용은 反北韓 人士를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은 주변4국이 모두 한국과 수교하고 있고,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우세한 현상황에서 한국에 의한 吸收統一을 매우 우려하는 한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體制維持에 최대의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북한은 「10대강령」을 통해 연방제를 고수하는 한편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南北共存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통일국가의 성격을 「자주·평화·중립」의 독립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주장해 온 통일3원칙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국가를 창설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남북공존을 통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은 남북공존을 통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로 평가된다.

이밖에 「10대강령」에 내포된 대남정책의 방향은 남한의 정치·군사력 對外協力 약화, 民間次元의 남북경제교류 증진 등이다.

첫째, 북한은 「10대강령」에서 民族自主를 강조함으로써 남한의 정치·군사적 대외협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배격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정치·군사적 대외협력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4개 대남 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0대강령」은 사실상 「4개 대남 요구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분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10대강령」을 통하여 民族大團結의 정당성을 선언적으로 천명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남한이 「4개 대남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4개 대남 요구사항」 가운데 駐韓美軍 철수와 관련하여 남한의 일방적인 「의지 표명」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남한의 신정부가 “자주적인 문민정권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남한내 주민여론을 선동하는 한편, 韓·美關係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제7항의 내용은 「통제된 개방」정책의 근거인 동시에

해외교포 및 남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해외교포와 남한 기업가들에 의한 투자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자본·기술을 도입하여 당면한 經濟危機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2) 「主 對美協商, 從 南北對話」戰略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부터 대미 직접접촉을 개시하고, 1990년 9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對美·日 接近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질서 재편의 主導權이 美國에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핵문제 해결 및 일·북한 국교정상화 문제 역시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판단에서 對日關係 보다는 對美關係를 중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미·북한은 1988년 12월 6일 北京에서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한 이래 1993년 9월 15일까지 35차례의 회합을 가졌으며, 1992년 1월 22일 당비서 김용순과 켄터 미국무부 정무차관 간에 최초의 차관급 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³⁴⁾ 또한 북한

34) 北韓은 이 會談에 대해 “이번에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조선반도와 동북아세아지역의 평화와

의 NPT탈퇴 선언 이후 1993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제1단계 미·북한 뉴욕회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2단계 미·북한 제네바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對美 관계개선 理由와 條件은 김일성이 1991년 9월 26일 일본 岩波書店 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 대답에서 김일성은 대미 관계개선 노력의 이유를 “미국이 조선의 분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며 통일문제 해결이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대미관계 개선의 條件은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길로 나간다면”이라는 것이다.³⁵⁾ 또한 김일성은 1992년 4월 12일 「워싱턴 타임즈」紙 기자단과의 담화를 통해 冷戰 종식에 따라 미·북한 관계개선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사찰 문제와 美軍 유해송환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며, 평양의 미국대사관 개설문제는 朝·美 關係 개선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³⁶⁾

안전에 부합되는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공식 평가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2월 7일. 또한 김일성은 1992년 3월 31일 일본 「朝日新聞」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 회담에 대해 “이것은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아직은 첫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3일.

35) 「로동신문」, 1991년 11월 11일.

북한의 NPT탈퇴 이전의 미·북한간 접촉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의 진전, 미군유해 송환, 反美 적대선전활동 중지, 테러행위 및 폭력 불사용,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해외판매금지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직접대화 및 관계개선, 對北 핵 불사용선언,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및 3자회담 개최, 팀스피리트 중지 등을 요구하여 미·북한 관계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제1, 2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을 통해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였다. 제1단계 미·북한 뉴욕회담 결과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①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불위협, ②핵안전장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전보장 및 상대방의 자주권 상호 존중, 내정불간섭, ③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 3개 원칙에 합의하고, 이 원칙에 따라 양국 정부는 정당·평등·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NPT 탈퇴 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³⁶⁾ 북한의 NPT 탈퇴 발효시한인 6월 12일 직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회담 결과는 북

36)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

37) 「로동신문」, 1993년 6월 13일.

한의 「NPT 탈퇴 임시정지」를 통하여 對北韓 國際的 制裁措置 발동이라는 미·북한간 파국적 대결이 아니라,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계속 모색하려는 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미·북한 뉴욕회담의 합의에 따라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미·북한회담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IAEA·북한간, 남북한간, 미·북한간의 새로운 3角 協商構圖가 마련된 한편, 미·북한은 북한의 경수로 도입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토의하며, 쌍방간 전반적 관계개선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내 다음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³⁸⁾

제1, 2단계 미·북한회담 결과에 대해 강성산 총리는 1993년 9월 8일 국가수립 45주년 기념행사 보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8) 「로동신문」, 1993년 7월 21일. 이러한 미·북한 제네바회담 결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북한 및 남북한간 쌍무협상 계기가 조성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3대 지표인 북한의 NPT체제 완전 복귀, IAEA 특별사찰 수용, 남북한 상호사찰 실시 중 어느 하나도 달성된 것이 없으므로, 제네바회담은 결국 북한 핵문제를 북한의 NPT 탈퇴 이전 상황으로 복귀시킨 것에 불과하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호상존중과 불가침을 골자로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그 원칙들이 재확인된 것은 근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로 됩니다.³⁹⁾

한편 북한은 제네바회담에서 ①對北韓 핵불사용의 明文化, ②한반도 핵무기 불배치 선언, ③팀스피리트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④對美 평화협정 체결, ⑤테러국 명단에서의 북한 제외, ⑥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6개 要求事項을 미국에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요구사항은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에서 남한 당국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미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⁴⁰⁾

제1, 2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미·북한은 1994년 2월 25일 실무접촉을 통해 ①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②3단계 미·북한

39) 「로동신문」, 1993년 9월 9일.

40) 「로동신문」, 1994년 1월 1일.

고위급회담 개최, ③IAEA사찰 수용, ④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등 「4개 동시행동조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고 현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⁴¹⁾

1994년 6월에 들어 유엔 안보리가 대북한 국제적 제재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6월 13일 IAEA탈퇴를 선언함으로써⁴²⁾ 국제적 제재조치 발동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터(Jimmy Carter) 前美大統領의 訪北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미·북한 고위급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3) 聯邦制 統一方案 堅持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方案을 발표한 이후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연방국

41) 「로동신문」, 1994년 4월 29일.

42)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내용은 ①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즉시 탈퇴, ②특수지위하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 거부, ③유엔제재는 곧 선전포고로 간주 등이다. 「로동신문」, 1994년 6월 14일.

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후 점차 중앙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연방제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의 기본틀이 바뀐 점은 없으며, 이는 「10대강령」에서도 반복·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統一方案은 통일3원칙에 따른 「하나의 민족,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聯邦國家를 창설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일국가의 形態는 남북 두 지역정부가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용납하는 기초위에 동등하게 참가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이며, 制度統一은 後代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성격은 자주·평화·비동맹의 독립국가라는 것이다.

둘째, 統一過程과 관련하여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명하면서 선결조건을 제시하였으며, 「10대강령」을 채택하면서도 남한에 대해 외세의존정책의 포기과 미군철수 의지 표명,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 중지 및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셋째, 統一原則과 관련하여 북한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7.4 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북한

은 자주원칙을 외세배격 입장으로, 평화원칙을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로, 민족대단결을 각계 각종 인민들의 자유접촉·왕래 및 이를 위한 사상적·제도적 장벽 제거로 해석하고 있다.

넷째, 統一理念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외세적·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통일의 主體에 관해서 역시 「조선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과정에서의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에 관해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統一過程을 무시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過渡機構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제시하고 있고,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개최→통일방안 협의·결정→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선포」 등의 통일국가 수립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1993년 9월 5일부터 10월 29일간 1993년도 김일성 방송대학 과정의 일환으로 「조국통일에 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30회에 걸쳐 特講 形式으로 방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한반도의 구체적 현실, 남북의 利害關係,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염원, 현실적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과 남이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聯邦制 방식 이외에는 없다.

둘째, 聯邦國家의 구조와 형태, 지역정부의 권한과 의무, 통일국가의 성격과 국호 등은 북과 남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염원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규정된 것이다.

셋째, 이 방안은 한반도의 긴장상태 격화 및 전쟁 조성요인들의 제거를 先決條件으로 제시하고 있고, 협상과 합작이라는 平和的 方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염원에 부합된다.

넷째, 이 방안은 한 국가 내에 상이한 사상과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2. 南北關係 現況

가. 當局間 會談

199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제1~3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나, 先 정치·군사문제 해결, 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장

한 북한의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이산가족문제 해결, 경제교류·활성화를 주장한 한국의 입장이 대립하여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1991년 10월에 재개된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상호 실체 인정,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단일문건 채택, 법률적·제도적 장애 조항 삭제, 이산가족문제 해결조항과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조항 신설 등을 제시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단일문건으로 된 「기본합의서」의 명칭 및 내용 구성에 합의한 후, 12월 11~13일간 개최된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제5차 고위급회담 종료 후 남북한은 3차례의 대표 접촉을 가지고 12월 31일 핵무기 시험·제조·접수·사용 금지, 핵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농축시설 보유 금지, 핵사찰 등 6개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92년 2월 19일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은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반목과 불신에서 벗어나 화해·공존관계를 제도화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⁴³⁾

제6차 고위급회담 이후 남북한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分科委員會와 核統制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1992년 3월부터 제7차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각각 3차례에 걸친 부문별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통일3원칙의 해석, 부문별 우선 순위, 협의·이행방법, 부속합의서의 성격, 공동위 구성시기, 공동위 기능, 접촉창구 등 주요 쟁점과 함께 각 분과위 및 핵통제공동위에서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제7차 고위급회담(1992.5.6~7)에서 「기본합의서」 규정에 따라 5월 18일까지 남북연락사무소 및 군사공동위, 경제·교류협력공동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 등을 구성하고 화해분야 이행기구로서 「남북화해공동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8.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 차기 회의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7차 고위급회담 결과는 합의서 발효 이후 담보상태에 있던 남북협상 상황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이며, 합의서 이행에 대한 양측의 실천의지를 확

43) 「기본합의서」 채택·발효의 의의는 첫째, 「기본합의서」에 정식 국호와 서명 당사자의 직함을 명시함으로써 相互實體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 공존체제 구축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건설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둘째, 「기본합의서」는 제3국의 개입 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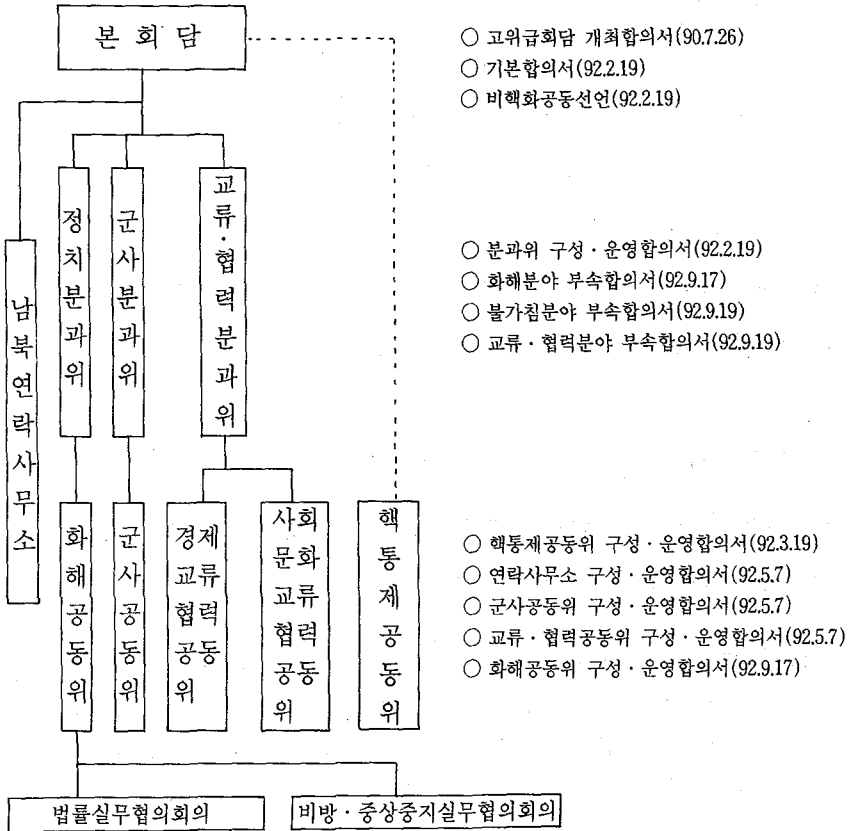
인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이행·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결실을 낳은 것이었다.

南北韓은 제7차 고위급회담 이후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41차례에 걸친 각 분과위 회의와 위원장 및 위원 접촉, 그리고 11차례의 핵통제공동위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남북관계 규정, 분쟁 방지에 필수적인 정찰활동 중지 등 核心事項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시한내 부속합의서 작성에 실패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제7차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을 북한 핵문제 철회, 이인모 송환, 포커스렌즈 훈련 중지 등을 前提條件으로 무산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사업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핵문제에 관한 남북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그후 제8차 고위급회담(1992.9.15~18)을 통하여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이행·준수를 위한 3개 附屬合意書 및 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가 채택·발효되고, 4개 공동위 운영개시일 등이 합의됨으로써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이 개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제8차 고위급회담까지 12개의 문건을 채택·발효하는 한편, 고위급회담 이외에 3개 분과위, 핵통제공동위, 4개 부문별 공동위, 남북연락사무소, 2개 실무협의회 등 총 12개 協議機構를 구성하는 성과를 산출하였으며(도표

〈도표 1〉 남북간 기구와 합의서



1 참조), 1992년 11월 5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4개 공동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8차 고위급회담 이후 11월 3일 북한 공동위원회 위원장들의 연합성명을 통하여 공동위 제1차 회의 개최를 전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12월 19일에는

고위급회담 북한대표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여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을 이유로 제9차 고위급회담을 공식 거부하였다. 공동위 회의 및 제9차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핵통제공동위 위원 및 위원장 접촉은 지속되었으나,⁴⁴⁾ 남한이 1993년 1월 26일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를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1993년 1월 29일 고위급회담 북한대표단 성명을 통하여 대화재개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當局間 會談은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동결되었다.

남북대화가 동결된 상황에서 남한의 문민정부 출범과 북한 핵문제가 국제화된 1993년 3~5월 북한측은 남북합작·통일전선 가능성을 모색하였고,⁴⁵⁾ 6월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44) 1992년 3월 19일 남북 핵통제공동위 발족이래 1993년 1월 25일 제1차 위원장 접촉까지 총 22회(본회의 13, 위원장 및 위원 접촉 9)의 협상과정에서 남북한은 사찰원칙, 사찰방법, 사찰대상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국은 核問題 先決論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남북 상호사찰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사찰원칙에 대해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북한은 의심동시해소 원칙을 주장하였으며, ②査察方法에 관해 한국은 정기사찰·특별사찰 병행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특별사찰 거부 및 전면동시사찰 실시 입장에 있다. ③査察對象에 대해 한국은 「핵물질·핵시설, 핵관련 군사기지를 포함하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시설」을, 북한은 군사기지 사찰 거부, 「영변 對 모든 주한미군기지」 등을 주장하였다.

개시된 이후에는 대미 유연·대남 강경전략을 추구하였다. 1993년도의 南北 當局間 對話는 10월에 들어 特使交換을 협의하기 위한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만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측은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가지 前提條件을 내세워 절차토의를 지연시키다가 1993년 11월 4일로 예정된 제4차 접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다시 전면 중단되었다.⁴⁶⁾

-
- 45) 남한은 북한의 NPT탈퇴 효력 발생일(1993.6.12)을 앞두고 5월 20일 北韓 核問題 해결을 위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5일 중대사에 대한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特使交換」을 逆提議하였다.
- 46)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한측은 핵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특사교환 節次問題만을 협의·타결할 것을 요구,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서(안)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절차문제를 제시하면서도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가지 要求條件과 서해간첩선 문제, 생화학무기 개발문제 등 특사교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차 접촉(10.15)에서는 양측이 특사교환에 따른 절차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제3차 접촉(10.25)에서는 북한측도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서(안)를 제시하였는 바, 특사의 임무, 교환시기 등에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특사의 급, 수행원, 교환방식, 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등에 있어서는 의견이 접근하였다. 또한 양측은 11월 중 특사교환 성사 및 11월 4일 4차 접촉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사교환이라는 새로운 남북대화 통로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1월 3일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북한측 단장은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을 거부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제25차 한·미 연

중단되었던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은 1994년 3월 3일 제4차 접촉이 개최됨으로써 재개되어 3월 19일 제8차 접촉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⁴⁷⁾ 북한측이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 호응한 이유는 1994년 2월 25일 미·북한 뉴욕접촉 4개 합의 가운데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를 실천하여 제3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3월 21일로 예정되었던 제3단계 미·북한회담 개최 무산이 기정사실화되자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실무대표접촉은 아무런 결실없이 결렬되었다.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의 결렬과 함께 북한측은 3월 21일 실무대표 접촉 북측대표단 성명 및 3월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실무대표 접촉의 결렬 책임은 남한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南韓當局을 격렬히 비난하고, 反政府鬭爭을 고무·선동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⁴⁸⁾

레안보협의회에서 틱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사교환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 것임을 밝혔다.

- 47) 북한은 제4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측은 특사교환 절차논의를 위한 先決條件으로 기존의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 체제 포기」 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신형무기 반입 중지」,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취소 등을 요구하였다. 제8차 실무대표 접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동신문」, 1994년 3월 20일 참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IAEA 이 사회의 對北 제재안 채택 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국제적 제재조치 발동 논의 본격화 등의 상황에서 카터 前美大統領의 북한 방문시 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를 통보함으로써 「主 대미회담, 從 남북대화」 전략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6월 20일 南北頂上會談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은 6월 22일 이를 수락하여 6월 28일 예비접촉이 이루어져 남북정상회담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⁸⁾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되고 남북당국간 회담 역시 동결되었다.

48) 「로동신문」, 1994년 3월 21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특히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이 김영삼 파썸매국 <정권>에 대하여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미 판단한 이상 단호한 투쟁을 벌려 매국노들을 제거함으로써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하였다.

49)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반세기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반목과 대결, 분렬의 역사를 민족단합과 평화, 통일의 력사로 전환시키고 민족의 독립과 륜성, 번영의 전기를 열어주는 새 민족사의 창조로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우려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을 주게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로동신문」, 1994년 6월 30일.

나. 南北交流

남한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이후 남북한간 인적 및 경제교류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북한 핵문제에 따라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면서 위축되었다.

첫째, 人的 交流分野에서 1989년 6월 이후 1994년 10월 현재 26건 696명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12건 575명이 남한을 방문하였다(도표 2 참조). 북한 방문은 고위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을 비롯하여 民間次元에서 1989년 7월 이대경 목사의 방북, 1990년 10월 남북통일축구대회 및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1992년 1월 권호경 목사의 방북, 1991년 4월 국제의원연맹(IPU) 평양총회 참가, 1992년 9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평양세미나 참가 등이 있었으며, 1992년 1월에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일행의 방북, 9월 고려합섬그룹 장치혁 회장 일행의 방북에 이어 10월에는 民官合同의 남포투자 실무단이 對北經濟協力 협의 및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 南韓 訪問은 고위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을 비롯하여 1990년 10월 남북통일축구대회, 1990년 12월 송년통일전통음악회, 1991년 5월 세계 청소년축구 단일팀 평가전과 11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서울세미나 참가 등이 있었고, 1992년 2월에

〈도표 2〉 남북한 주민의 상호 방문 (1989.6~1994.10.31)

명/(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북 한 방 문	1989	1 (1)	1 (1)	1 (1)
	1990	199 (7)	187 (6)	183 (3)
	1991	244(12)	243(11)	237(10)
	1992	303(17)	257 (8)	257 (8)
	1993	21 (6)	19 (5)	18 (4)
	1994	1 (1)	1 (1)	-
	계	769(44)	708(32)	696(26)
남 한 방 문	1989	-	-	-
	1990	306 (5)	306 (5)	291 (4)
	1991	175 (3)	175 (3)	175 (3)
	1992	113 (4)	103 (3)	103 (3)
	1993	6 (2)	6 (2)	6 (2)
	1994	-	-	-
	계	600(14)	590(13)	575(12)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0호(1994년 11월), p. 4.

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관리위원회 제1차회의 참가, 7월 김 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한국 산업시찰 등이 이루어졌다.⁵⁰⁾

그러나 1992년 말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고, 남한 기업인의 북한 방문이 유보됨으로써 1993년의 남북왕래는 이인모 노인의 방북과 서울·평양에서 UNDP관련 국제회

50) 통일원, 「통일백서 1992」 (서울: 통일원, 1992), pp. 277~295.

〈도표 3〉 남북주민간 접촉 (1989.6~1994.10.31)

건/(명)

구분		신청	승인	성사
총괄	1989	36 (70)	21 (22)	-
	1990	235 (687)	206 (652)	54 (368)
	1991	753 (2,195)	685 (2,030)	254 (1,161)
	1992	802 (2,422)	744 (2,250)	221 (945)
	1993	1,172 (2,220)	1,148 (2,182)	313 (707)
	1994	1,069 (2,227)	1,004 (2,131)	194 (590)
분야별	이산가족	1,946 (2,200)	1,923 (2,077)	642 (717)
	학술	320 (1,755)	297 (1,720)	68 (933)
	문화	172 (871)	139 (807)	18 (368)
	종교	144 (561)	116 (503)	26 (259)
	체육	80 (218)	74 (195)	14 (60)
	경제	998 (2,609)	935 (2,437)	222 (651)
	언론·출판	124 (382)	95 (314)	22 (87)
	관광·교통	90 (293)	81 (256)	18 (69)
	기타	192 (1,080)	148 (975)	43 (718)
	계	4,066(9,869)	3,808(9,284)	1,073(3,862)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0호(1994년 11월), p. 5.

의 참석 등 6건 24명에 불과하였다.⁵¹⁾

南北往來는 1993년부터 격감하였으나, 남북주민간 접촉은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총 4,066건 9,869명에 달하며, 이산가족, 경제분야의 접촉이 전체 성사건 중 80.5%를 점유하였고, 그 다음이 학술, 종교, 언론·출판 등의 순이다(도표 3

51) 통일원, 「통일백서 1993」 (서울: 통일원, 1993), p. 152.

참조).

둘째, 經濟分野의 남북교류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부문은 物資交易이다. 한국 정부는 1988년 10월 7일 민간상사의 북한 물자 교역 및 중계, 북한 원산지 표시, 상표부착, 교역 물자 관세 비부과, 경제인 상호접촉·방문, 북한국적 상용선박의 입항 등을 허용함으로써 남북물자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10월 이후 1994년 9월 말까지의 交易規模는 승인 기준으로 총 1,980건, 8억 520만 1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반입은 1,724건, 7억 3,797만 1천 달러, 반출은 256건, 6,722만 9천 달러로 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관기준으로는 총 2,422건, 6억 4,963만 5천 달러 가운데 반입은 2,080건, 6억 4,963만 5천 달러, 반출은 342건, 3,667만 5천 달러이다. 통관기준으로 볼 때, 반출입 수지는 남북교역의 특성상 계속 남한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도표 4 참조).

이러한 성장추세와 관련하여 交易方式 역시 순수 간접교역 방식에서 쌀, 무연탄, 한약재 등 일부 품목은 直交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역형태는 단순교역이 대부분이지만 1992년에 들어 남북물자가 상호 교환되는 연계교역과 남한이 원자재를 보내 북한에서 가공한 후 그 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委託加工交易 등이 이루어져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

히 위탁가공교역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도표 5 참조).

한편 交易品目 가운데 반입은 철강, 금속,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과 중간원자재가 대부분이며, 반출은 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⁵²⁾

〈도표 4〉 남북교역 규모

건/천 달러

	반 입		반 출		계	
	승인	통관	승인	통관	승인	통관
1988	4/ 1,037	-	-	-	4/ 1,037	-
1989	57/ 22,235	66/ 18,655	1/ 69	1/ 69	58/ 22,304	67/ 18,724
1990	75/ 20,354	78/ 12,278	4/ 4,731	4/ 1,187	79/ 25,085	82/ 13,465
1991	328/165,996	300/105,722	40/ 26,176	23/ 5,547	368/192,172	323/111,269
1992	365/200,685	510/162,863	42/ 12,818	63/ 10,563	407/213,503	573/173,426
1993	478/188,528	601/178,166	76/ 10,262	97/ 8,425	554/198,790	698/186,591
1994.1~9	421/139,136	525/145,276	93/ 13,173	154/ 10,884	514/152,309	679/146,160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0호(1994년 11월), pp. 11, 22.

〈도표 5〉 위탁가공교역 승인 현황

단위: 천 달러

연 도	건 수	반 입	반 출
1991	1	22,880	13,406
1992	10	556,076	413,635
1993	44	4,384,634	3,610,788
1994.1~10	84	14,270,752	10,126,366
총 계	139	19,234,342	14,164,195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0호(1994년 11월), p. 18.

52) 위의 책, pp. 161~174 참조.

第 Ⅲ 章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1. 政策推進 影響要因

가. 政治·社會的 要因

북한의 政治體制는 김일성 유일체제, 즉 “계급의 최고대표자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라고 정의되는 「김일성 수령」 일개인에 의한 통치체제로 특징지어졌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이 창시하였다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함으로써 首領의 유일사상으로 전당과 인민을 결속하는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수령의 唯一的 領導體制는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⁵³⁾

53) 즉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國家主席制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수반의 기능과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결합시켰다. 북한 스스로도 사회주의 헌법의 주요 특징을 “국가기관들의 모든 활동에서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데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989. “새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새 국가기관체계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서 수령님의 유

김일성 유일체제와 함께 중앙집권적으로 조직 규율된 조선로동당은 모든 정치조직을 장악하여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기능하였다.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과거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黨獨裁의 헌법상 근거가 규정되었으며,⁵⁴⁾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黨優位路線이 보다 명백해졌다.⁵⁵⁾ 북한의 행정·입법·사법기관 등 國家機關은 黨의 영도하에 당정책을 집행할 뿐이며, 각종 大衆組織들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引傳帶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치체제는 수령의 영도하에 단일 이데올로기와 정당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직업별·지역별로 각종 대중조직을 조직하여 주민들을 동원하는 動員體制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하다.⁵⁶⁾

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국가기관체계이다.” 「조선로동당력사」, pp. 467~468.

54)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55) 1992년 개정 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또 다른 특성은 김일성이 장남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後繼體制를 구축해 온 점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바 있으며,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된데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唯一한 後繼者로 추대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으며,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것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이다. 김정일은 제6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북한의 권력 서열에서 제2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後繼者로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제6차 당대회 이후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외 정책을 관장하여 수령의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을 통해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80년대속도 창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57) 「조선로동당력사」, p. 473.

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을 주도하여 思想統制와 人民生活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사회주의권 붕괴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2년 1월 3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년 10월 10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1993년 3월 1일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은 허용될 수 없다”와 같은 일련의 談話 論文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의 概念 規定 및 總體的인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후계체제 구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정일은 理念的 次元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함으로써 김일성의 유일한 사상적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비서국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장악하여 당·정·군 엘리트 및 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상징조작을 강화하는 한편, 黨·政·軍의 공식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말음으로써 정치권력의 制度的 基盤을 구축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 후원하에 원로세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주요 직책에 친·인척 및 동창을 충원함으로써 族閥主義에 의한 인맥기반을 형성하여 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에 절대적으로 충성해 온 40명 내외의 인물들이 당·정·군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는

결과를 낳았다.⁵⁸⁾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후견하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을 頂点으로 형성된 북한의 정치 체제는 변화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 체제는 안정된 상황에서 金正日 唯一體制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에 의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2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이념적·제도적·인적 차원에서의 權力基盤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년 4월 원수,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軍部를 단계적으로 장악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이미 확보하였다.

둘째, 북한체제는 김일성 유일체제의 특성을 지녀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김정일만이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였다.⁵⁹⁾

58) 全賢俊 外,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참조.

59) “수령의 후계자로는 수령의 모든 사상정신적 품모와 특질을 그대로 체현하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고 있으며 수령에 의하여 선정되고 키워지며 수령의 가장 큰 신임과 총애를 받으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사랑을 받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자만이 될 수 있다.”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

셋째,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을 관장해 왔으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정의하고, 북한이 취해야 할 총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인물은 김정일이었다.

넷째, 김일성 사후 북한의 공식매체들은 김정일을 수령으로 호칭하는가 하면, “김일성동지는 곧 김정일동지이다,” “우리 조국은 곧 김정일동지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象徵操作 및 김정일 偶像化作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⁶⁰⁾

그러나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김일성의 절대적인 유일체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정통성의 기반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사업,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등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카리스마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리스마는 계승될 수 없는 것이며, 김정일의 治績으로 부각할 수 있는 업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체제는 정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둘째, 김정일 유일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난을 해소하여 인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 1984), p. 386.

60) 「로동신문」, 1994년 9월 8일; 9월 9일.

유일체제는 필연적으로 外部情報가 차단된 통제 폐쇄체제에 서만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改革·開放을 할 수 없 으며,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김정일 유일체제는 인민생활의 가 시적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상통제만으로 인민 의 지지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김일성 사후 외형적으로는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고 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軍部の 영향력 이 강화된 상황에서 黨 중심의 集團指導體制 성격을 띤 징 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 도대회에서 김영남은 추도사를 통해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 로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 두리에 단결”을 강조하였다.⁶¹⁾ 또 한 8월 27일 김정일의 노작 발표 2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계응태는 주요 업무의 “당조직을 통한 보고”를 언급하고, 김 정일 중심의 당중앙위원회에의 단결을 거듭 주장하였으며,⁶²⁾ 이러한 내용은 9월 9일 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홍성남의 보고문에도 반복되었다.⁶³⁾ 이와 같은 「당중앙위원 회 중심의 단결」에 대한 강조는 김정일이 국가주석 당총비 서직에 취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조직에 의해 권력이 행

61) 「로동신문」, 1994년 7월 21일.

62) 「로동신문」, 1994년 8월 28일.

63) 「로동신문」, 1994년 9월 10일.

사되는 「당적 지배체제」의 양태를 떨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軍部の 영향력 증대 가능성은 이미 1992년 개정 헌법에서 나타난다. 개정 헌법은 「국방」이라는 별도의 章을 신설하여 軍의 사명을 “사회주의제도 보위”로 규정하고(제59조), 4대군사노선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제60조)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軍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후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백학림, 김봉률, 김광진, 김익현 등 차수들이 김기남 당비서에 앞서 18~21위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군부 원로들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체제유지를 위해 물리적 강제력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넷째, 김정일체제는 공식 출범과 함께 필연적으로 김정일 측근의 충성과 및 친·인척을 중심으로 權力構造를 再編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들은 김정일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이래 「간부배합」 정책을 중시하여 老·壯·靑 배합을 추진하여 왔고, 김일성 사후에도 이러한 정책은 지속될 것인 바,⁶⁴⁾ 원로집단의 퇴진에 따른 세대교체 및 충원과

64) 이러한 북한의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1994년 8월 27일 김정일의 노작 발표 2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계웅태는 “간부대렬의 로, 중, 청을 옮겨 배합하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로동신문」,

정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불만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외형적으로는 김정일 유일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에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체제가 실질적으로 集團指導體制의 성격을 띠 경우 김일성 유일체제와는 달리 권력장악, 정책노선 등을 둘러싸고 권력 상층부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김정일이 건강문제로 집무 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보다 증대할 것이다. 특히 軍部の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은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심 권력층 내의 갈등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소외된 김성주·김성애·김평일 등을 중심으로 한 반 김정일 세력의 결속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조직적인 社會統制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體制維持에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체계화하여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추진하면서 체제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北韓式 社會主義의 우월성에 대한 論理는 김정일이 1991년 5월 5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들과의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體制化되었다.⁶⁵⁾ 또한 김정일이 1993년 3월 1일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신념화·도덕화하기 위한 사상개조작업이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⁶⁶⁾ 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⁶⁷⁾

이와 같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를 통한 사상통제와 더불어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함으로써 體制結束을 도모하

65) 북한은 김정일이 이 담화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주체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라고 공식 기술하고 있다. 「조선로동당력사」, p. 585.

66) 「로동신문」, 1993년 3월 4일.

67) 한편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改正한 憲法에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제3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명문화하는 한편,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및 사상혁명 강화(제10조),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 수호(제80조) 등을 규정한 것은 思想統制를 통한 體制維持가 북한의 핵심 國家目標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 있다. 북한은 1993년 9월 28일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동년 12월 10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결정⁶⁸⁾을 채택함으로써 民族文化遺産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주민들을 민족자주의식 및 애국주의사상으로 결속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 사상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1994년 3월 31일 당창건 이후 최초로 1만 600여명이 참가한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가 개최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대회에서 제시된 당세포비서의 5대과업 가운데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과 조국의 안정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는 것은 住民思想統制와 體制維持가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⁶⁹⁾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처음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⁷⁰⁾

68) 「로동신문」, 1993년 12월 11일.

69) 「로동신문」, 1994년 4월 1일.

70)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김정일은 이어서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언제나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

그러나 북한이 각종 조직 및 사상교양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의 심화 및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라 주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住民意識 變化의 핵심 내용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개인주의적 경제행위, 일탈행위 등의 증대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암시장 및 지하경제의 발달, 화폐에 대한 가치변화, 뇌물의 성행, 좀도둑의 성행 등 物質主義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학습 및 조직생활 기피, 노동규율 위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이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식량폭동 등 비조직적인 저항도 발생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공업화로 나타난 계급구조의 재편, 도시화, 교육수준의 증가, 한국전쟁 이후 세대의 증가 등에 따른 社會領域의 獨自性 증대는 다원주의적·실용주의적 사고의 확산을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社會統制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사회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體制維持의 관성상 실질적으로는 당중심의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띠더라도 외형적으로는 首領論에 입각한 「김정일 유일체제」를 표방할 것이며, 이미 전개해 온 김정일 우상화작업을

데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외에 그 어떤 다른 묘술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가속화할 것이다. 유일체제 구축 및 개인의 이상화는 폐쇄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카리스마도 부족한 김정일이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남한이라는 통일의 상대방과 社會開放을 초래할 전면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이 폐쇄사회로 유지되는 한 어떠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체제의 성격상 김정일정권은 기존 對南政策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남북화해·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나. 經濟的 要因

北韓 經濟는 1993년 12월 9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회의에서 1987~1993년의 제3차 7개년계획이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방위력 강화”로 인해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 있다.⁷¹⁾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모순에 기인하는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상실 및 노동생산성 정체, 자본 기술 그리고 경영 관리능력의 부족,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과다한 軍事費 및 체제강화와 대외홍보를

71)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

위한 비경제적인 분야에 과도한 투자재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현황을 統計數値로 살펴보면, 1993년 현재 북한의 GNP는 남한의 1/16인 205억 달러, 1인당 GNP는 1/8인 904달러로 추산되며, 1990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991년 -5.2%, 1992년 -7.6%, 1993년 -4.3%등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북한의 현 경제상황은 1989년도에 비해 20% 이상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⁷²⁾

한편 국가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에너지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생산은 시설 노후화 및 낙후된 채광기술로 인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90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3,320만톤이었으나, 1993년에는 2,170만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⁷³⁾ 또한 북한의 발전설비능력은 1990년 714.2만kw를 기록한 이후 정체상태에 있으며 發電量은 1989년 292억kwh에서 1990년 277억kwh, 1991년 263kwh, 1992년 247kwh, 그리고 1993년 221억kwh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북한의 연간 전력수요는 500~600억kwh로 추정되고 있으나 1990~1993년 동안의 연평균 전력생산량은 252억kwh로서 총수요의 40~50% 정

72)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

73)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1993);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

도에 불과하며,⁷⁴⁾ 이에 따라 최근 工場可動率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에너지 需給構造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에너지의 석유의존도가 매우 낮으나, 석유수급 실태가 수산업 농업 수송 및 군사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대외경제협력 여건의 악화 및 경화부족으로 원유도입량을 매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에너지공급 부족은 북한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2년도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은 총 152만톤으로 전년도 도입량보다 19.6% 감소되었으며 1993년 원유도입량은 136만톤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원유수요량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북한의 원유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전까지의 원유도입량이 250~300만톤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유부족량은 100~150만톤으로 추정된다.⁷⁵⁾ 더욱이 북한에 대한 최대 원유공급국인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로 對北韓 수출여력이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1991년부터는 거의 국제가격을 적용하고, 1993년부터는 硬貨決濟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유류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74) 남궁영,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70~72.

75)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1994).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3년 현재 북한의 外債總額은 약 103.2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총외채 대 GNP 비율은 50%가 넘고 있으며,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외채 대 수출비용은 1000%를 초과하여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대외신용도는 세계 119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는 바, 이는 북한 경제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선진외국의 자본 기술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食糧 및 生必品の 부족은 거의 한계상황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곡물생산에 부적합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웠으며, 최근에는 이상저온현상, 병충해 확산 및 농약부족, 경작방식 실패 등으로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食糧需要는 연 640~660만톤 정도로 추정되나 실질생산량은 1991년 443만톤, 1992년 427만톤, 1993년 388만톤으로 매년 약 200만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식량수입에 투입할 외화가 부족하여 값싼 중국산 옥수수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의 경우, 총식량수요량은 658만톤이나 1992년의 곡물생산량 427만톤과 1993년 곡물수입량 109만톤을 합하여 供給量은 536만톤에 그쳐 122만톤의 식량부족을 겪었다.⁷⁶⁾ 1994년에는 1993년 곡물생산량이 388만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식량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배급은 노동자 1일 700g, 노인과 가정주부 300g이 지급되는데 옥수수가 절반이 넘고, 그것도 「애국미」, 「절약미」라는 명목하에 반납됨으로써 실제로는 배급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값이 싸고 양이 많은 옥수수·밀가루 등을 수입하고, 「하루두끼 먹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량이 부족하여 식량기근이 만성화되고 있다. 또한 일반 주민에 대한 의류 공급물량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 역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체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를 통한 思想統制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1980년대 말부터 특히 경공업 발전을 통한 주민불만 해소에 주력하면서,⁷⁶⁾ 對外經濟開放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첫째, 경공업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고 동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

76) 統一院, 「1992년도 北韓의 食糧需給 現況分析」(1993); 「內外通信」, 第901號 (1994.5.26).

77) 북한이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주력해 온 부문은 경공업 발전 뿐만 아니라, 농촌경리와 수산업 발전, 상품공급사업·사회급양사업·편의 봉사사업 등 봉사사업 개선,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 등이다. 「조선로동당력사」, pp. 579~583 참조.

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0년 6월 전국경공업대회를 개최하여 생활필수품 생산을 독려하였다.⁷⁸⁾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주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1992년 2월 13일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시책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여 賃金인상을 통해 人民生活 향상시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⁷⁹⁾

둘째,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하여 북한은 1989년 7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北京支社를 통해 83개 합작투자유치 희망사업의 내역을 공개하였으며,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회의에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안」을 최초로 표명한 이래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 동북아조정관회의에서 「나진·선봉경제지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北韓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정무원 결정 제74호 채택을 공식 발표하여 새로운 段階의 對外經濟開放政策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2년부터는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한 각

78) 위의 책, pp. 580~581.

79) 「로동신문」, 1992년 2월 15일.

종 法令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憲法 일부를 수정하여 대외경제개방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⁸⁰⁾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 등을 채택 발표한 이후 1994년 12월까지 16개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법을 제정하여 對外經濟開放을 위한 法的 制度的 裝置를 보완하였다.⁸¹⁾ 또한 북한은 대외개방을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1992년 이후 일본, 동남아,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외자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수출촉진을 위해 집방행정단 위 및 기업의 대외무역을 허용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과의 변경무역과 합작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⁸²⁾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는 1993년 12월 9일 개

80) 개정 헌법 제16조는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1)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서울: 통일원, 1994) 참조.

82) 북한은 1993년 말까지 총 140개 이상의 무역상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규모 무역상사의 子會社 등을 포함할 경우 도합 200여개의 무역상사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회의에서 제시되고, 19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채택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관철 및 석탄·전력·철도운수 금속공업 발전이다. 특히 농업제일주의와 경공업제일주의는 결국 주민의 먹고 입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필품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북한이 이를 핵심 경제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住民不滿 解消에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수출품 생산기지 확충, 수출품생산 확대 강화, 대외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해 온 對外經濟開放 政策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1994년 9월 9일 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 보고문을 통해서도 「3대제일주의」의 추진을 천명하였는 바, 과거 重工業 優先主義에서 전환하여 농업 및 경공업발전을 통한 주민불만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무역제일주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지정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체의 投資誘致에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라, 대외개방의 波及效果를 극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고, 외국기업체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⁸³⁾

한편 1994년 10월 21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경제난 해소를 위해 經濟支援을 최대한 도출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미 南北交易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 바, 南韓企業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體制外的 要因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體制變革 및 脫冷戰時代의 도래 등 국제환경의 변화, 남한과의 격차 심화, 가중되는 經濟難 등에 따라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體制維持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83)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外國人 單獨企業은 자유 경제무역지대 내에만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제3조), 종업원 채용을 북한의 勞動機關과의 契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제16조), 「외국인 기업법」 제21조에는 직업동맹이 從業員 活動을 감독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북한이 제한된 地域만을 開放하고, 북한근로자를 철저히 감독하여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支配主義 반대 및 自主權 행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連帶性 강화, 非同盟運動의 강화 발전, 평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 등을 대외정책 추진방향으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질서 재편의 主導權이 美國에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對美 관계개선을 대외정책 추진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⁸⁴⁾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중·러와 기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정책을 추진하

84) 새로운 世界秩序 창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김일성이 1992년 9월 1일 「메디아 인도네시아」 신문사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김일성은 이 대답에서 “... 초대국들사이의 대결로 인한 랭전구조가 허물어졌지만 제국주의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변함없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현대제국주의는 계속 힘의 정책에 매달려 세계를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화의 세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1극화의 세계는 오히려 2극화의 세계보다 인민들의 자주화위업에 더 큰 장애와 위협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지배주의를 추구하는 또다른 새로운 블랙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9월 4일. 또한 北韓이 인식하는 1극화 세계란 “현대제국주의가 주인 노릇을 하며 판을 치는 <서방화>된 세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1극화의 세계에서 “미국은 다름아닌 <군주>의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세계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였다. 특히 북한 核問題가 국제화되면서 북한은 대미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김일성 사후 1994년 10월 21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타결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대외정책은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북한의 합의결과는 對北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과 미·북한 관계개선을 대가로 북한의 핵동결 및 궁극적인 핵주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⁸⁵⁾ 북한은 핵개발 동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對美 관계개선을 가시화하는 한편, 폐연료봉 건식보관 기간 및 과거 핵규명 시한의 연장을 통해 향후 협상카드

85) 北韓側 이행사항은 ①과거 핵의혹 해소: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특별사찰 포함) 이행, ②핵시설 해체: 5MW 원자로 연료봉 재장전 포기 및 추후 해체, 50MW 및 200MW 원자로 건설 중단 및 추후 해체, 방사화학실험실 즉시 폐쇄 및 추후 해체, ③연료봉 처리: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보관후 제3국으로 이전, ④NPT복귀: NPT완전 복귀 및 임시·일반사찰 이행, ⑤남북대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등이다. 한편 美國側 이행사항은 ①경수로 지원: 북한에 대해 2,000MW의 경수로 제공, 국제콘소시움 구성 및 공급계약 체결, ②대체에너지 지원: 5MW 원자로 가동과 흑연원자로(50MW 및 200MW) 건설 중단에 따른 대체에너지로 중유 제공, ③북한과의 관계개선: 대북 무역 및 투자제한 일부 해제, 전문가회의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시 연락사무소 교환 등이다. 미·북한 기본합의문 전문은 「로동신문」, 1994년 10월 23일 참조.

를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향후 김정일체제는 미국과의 關係正常化를 통해 정권에 대한 국제적 인정 획득, 경제난 타개를 위한 환경 조성, 안보위협 완화 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므로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미·북한 고위급회담 북한측 대표단 단장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합의문은 또한 두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건이다”라고 언급하였다.⁸⁶⁾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합의를 바탕으로 日本과의 修交交渉 타결을 재개하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유대강화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남한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여 對南關係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체제유지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외개방정책의 확대와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정일체제의 대외정책의 초점은 주변4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두어질 것이다. 결국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 과정에서

86) 「로동신문」, 1994년 10월 24일.

외교적으로 體制保障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실리획득으로 경제난 해소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까지는 상대적으로 南韓과의 관계증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이 중·러와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對美·日 關係正常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른 정치·경제적 다원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으로써 북한체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政策推進 方向

가. 二重的 對南政策 持續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7월 14일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단 訪北 환영 답화, 8월 13~15일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 9월 25일 단군릉 준공식에 대한 남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초청 서신 발송 등을 통해 統一戰線戰術을 계속 구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 정부의 조문단 訪北 불허, 범민족대회 불허, 「주사파」 척결 등의 조치에 대해 對南誹謗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9월 9일 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홍성남의 보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를 강도높이 비난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잃은 비보에 접하여 온 민족, 온 인류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때 유독 김영삼 일당만은 조의표시는커녕 우리에게 충구를 돌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조의를 표시하려는 남조선 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마구 체포구금하는 비인간적인 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온 남녘땅에 살벌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범죄적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남조선통치배들은 지어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애국적이며 평화적인 통일대축제인 제5차 서울범민족대회를 <불법, 리적 집회>로 몰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다치는데로 잡아가두는 전대미문의 횡포를 부리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영삼일당은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을 배반한 추악한 분렬주의자, 파썸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세계면전에 다시금 공공연히 드러내놓았습니다.⁸⁷⁾

더욱이 북한은 11월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를 발표하여 “김영삼역도를 제거하는 길만이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할 것이다”라고 주

87) 「로동신문」, 1994년 9월 10일. 또한 북한은 10월 16일 김일성 사망 1백일 추모회에서 행한 김기남의 추모사를 통해서 “초보적인 인륜 도덕마저 훼손하고 동족의 불상사를 악용하여 민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며 파썸폭압과 배신의 길로 나간 남조선 <문민> 통치배들은 북남관계를 다시금 반목과 대결의 원점에 되돌려 세우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만고대죄는 결코 용서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4년 10월 17일.

장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격렬히 비난하였다.⁸⁸⁾ 이와 같이 북한이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사후 内部結束을 위한 수단의 일환일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북한의 「主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 전략은 적어도 1995년에 들어 미·북한간 연락대표부가 설치된 이후 미·북한 國交正常化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일성 사후 對南政策의 基本 方向은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도대회시 김영남의 추도사, 8월 27일 김정일의 노작 발표 2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행한 계응태의 보고문, 9월 9일 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홍성남의 보고문, 10월 16일 김일성 사망 1백일 추모회에서 김기남의 추모사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천명된 「통일3원칙」 및 「10대강령」을 구현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 실현"이다. 이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은 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홍성남의 보고문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 "김영삼과 같은 호전광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3일.

우리 나라의 통일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구현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에 따라 실현되어야 합니다. ...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며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입니다. ...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도 장애와 난관이 있으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한테 뭉쳐 거족적인 투쟁으로 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아버지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삼천리 조국강토우에 활짝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⁸⁹⁾

이와 같이 김정일정권은 김일성시대에 정립된 대남·통일 정책을 계승·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기본틀이 곧 「통일3원칙」과 「10대강령」의 견지인 것이다. 북한은 「10대강령」 발표 이후 「평양방송」을 통해 1993년 9월 5일부터

89) 「로동신문」, 1994년 9월 10일. 또한 북한은 10월 16일 김일성 사망 1백일 추모회에서 행한 김기남의 추모사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련방제방식으로 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온 삼천리강토에 활짝 꽃피울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10월 29일간 1993년도 김일성 방송대학 과정의 일환으로 「조국통일에 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30회에 걸쳐 特講形式으로 방송하여 통일3원칙에 대한 해석을 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달성까지 일관되게 견지하는 기본강령인 「3대원칙」 가운데 인민 자신의 의사와 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自主原則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남한당국의 외세의존 저지 등 외세배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협상과 합작을 통한 통일달성을 의미하는 平和統一原則의 기본 요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및 남북간 자기 제도의 불강요이다.

셋째,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상과 이념, 제도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치는 것을 의미하는 民族大團結原則은 「10대강령」의 철저한 관철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정권은 대남·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통일3원칙」과 「10대강령」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정치·사회체제의 성격상 기존 對南政策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二重戰略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실천과 같은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기본합의문 이행을 통한 대미 관계개선 및 정권공고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나마 南北對話에 호응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표방하는 한편, 경제난 해소를 위해 南韓企業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유지와 표리관계에 있으며 唯一閉鎖體制가 유지되는 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시대에 설정된 대남정책의 논리와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추진방향을 사안별로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정권은 앞으로도 統一戰線戰術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을 거론하여 남한 내의 國論分裂을 유도하려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5년 분단 50주년에 즈음하여 남한내 일부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자극하기 위해 연방제 통일선전과 함께 정치협상회의, 8.15 범민족대회 공세 등을 강화하는 한편, 단군릉 발굴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민족정통성을 내세우면서 文化合作 명목의 통일전선공세를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⁹⁰⁾ 이와 함께 북한은 「10대강령」에 입각하여 정신대문제,

일본의 핵무장문제 등과 관련하여 남북 민간차원의 반외세 공동대처 선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활용하여 북한 출신의 在美僑胞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의 국내정치가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6년 국회의원 선거, 1997년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적극 구사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1994년 11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南北經濟協力 활성화 조치를 거부하였으나,⁹⁰⁾ 당국간 차원이 아닌 民間次元의 南北經協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수반되어야 하나, 미·일과의 관

90) 북한은 1993년 12월 10일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채택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온 겨레의 민족적 대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라고 지적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 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계시킨 바 있다. 「로동신문」, 1993년 12월 11일.

91) 북한은 이 담화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반자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과 南北交流·協力を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1일.

계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단기일내에 북한 경제 회생에 충분히 필요한 경제지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북한의 投資環境이 개선되고 있음을 표방함으로써 외국자본가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남한기업과의 경제협력 증진이라고 평가할 것이므로 제한된 개방지역에 남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모할 것이다.

셋째, 南北對話와 관련하여 북한은 「대화분위기」 조성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최대한 지연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북한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강석주는 미·북한간 기본합의문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남대화 관련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 이미 합의문건에 밝힌 것처럼 조미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북남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대화를 할 것”임을 밝혔다.⁹²⁾ 그러나 1995년에 들어 미·북한간 기본합의문 이행의 일환으로 남북 대화에 호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주요 현안문제와 관련된 북한측의 입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南北對話 재개시 남북한 쌍방의 우선적 과제가 각 공

92) 「로동신문」, 1994년 10월 24일.

동위별로 附屬合意書를 실천단계로 진입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의 즉각적 실천을 유보한 채 실리추구 측면에서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 「특례조치」라는 명분으로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측은 각 공동위별로 부속합의서 실천을 위한 「단일시행합의서」를 또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각 부속합의서에 「부기」로 처리된 未合意事項⁹³⁾부터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93) 「부속합의서」의 내용중 「부기」로 처리된 未合意事項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결정적인 障礙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는 核心事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첫째, 和解分野의 미합의사항인 ①단일의식·명칭으로 국제기구 가입, ②유일대표단 구성 등은 북한이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의 개정·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문제 불간섭」 조항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겨냥한 것으로 韓·美 同盟關係 이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不可侵部門에서 북측이 제기한 ①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금지, ②정찰활동 금지, ③영해·영공 봉쇄금지 등과 우리측이 제기한 서울·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등은 軍事共同委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交流·協力部門 중 핵심쟁점 사항인 북측의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주장이 화해부문 부속합의서 제4조에 의거하여 和解共同委 산하 「법률실무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南北交流·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화해 및 불가침분야에 있어서는 미합의 사항을 근거로 기존의 對南戰略을 고수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장하려 하는 반면, 특히 경제교류·협력분야에서는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實益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軍備縮小를 제안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1994년 11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南北經濟協力 활성화 조치를 거부하면서도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合意書와 機構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⁹⁴⁾ 따라서 북한측은 공동위 가동과 함께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북한측의 對南政策에 부응하는 「년차별·분기별 시

94) 북한은 이 담화에서 “경제협력에 대하여 말한다면 북과 남 사이에는 이미 김영삼이 집권하기전에 벌써 경제분야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 좋은 합의서들이 마련되었으며 이 사업을 담당할 북남경제사회문화분야의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들도 구성되었다. 쌍방이 이미 합의한데 따라 이러한 공동의 협력, 교류 기구들이 순조롭게 가동되었다면 지금쯤 북남 사이에는 경제 분야에서는 물론 사회문화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1일.

행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⁹⁵⁾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미·북한 기본합의문에 따라 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주장하면서 南北 相互査察은 당분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북한 기본합의문 이행의 일환으로 軍事基地를 제외한 시범사찰 성격의 비정기 일반사찰에 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離散家族의 상봉 및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의식과 對南觀이 크게 변질·동요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파급효과가 적은 판문점 면회소 설치문제와 미전향 장기수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등의 송환문제를 연계하여 타결하려는 입장을 나타낼 것이다. 다만 북한측이 대외적으로 南北關係의 진전을 표방하면서 남한 주민의 대북경계심 이완과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95) 북한측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연형묵 총리의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는 합의사항의 리행을 다그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전이라도 다같이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쌍방이 다같이 해결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문제들에 한해서는 순차를 협의하여 집행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합의사항의 리행방법으로서 년차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천해가자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9월 17일.

에서 이미 합의한 노부모 방문단 사업문제를 예술단 교환과 함께 급진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무산된 南北頂上會談과 관련하여 김정일정권은 서방의 자본·기술 획득, 대미·일 수교 및 김정일의 정권공고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재추진하여 외형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표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정일은 북한의 새로운 「수령」의 지위를 공고화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守勢的 共存戰略으로의 轉換

김정일정권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二重戰略을 당분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남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북한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세적 입장에서 南北共存을 制度化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북한의 대내정치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정권의 최대 목표는 體制安定性의 확보이기 때문에 남한이라는 통일의 상대방과 적대적 대결·경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共存政策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 및 남한기업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추진하더라도 시장경제기구 도입 등 경제체제의 본질적 개혁에 착수하지 않는 한 經濟回生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남한과의 총체적인 國力 隔差가 좁혀질 수는 없을 것이며, 남북한 軍事力 均衡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흡수통일을 배제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대미·일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체제유지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으나, 이는 곧 한반도 현상인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실질적으로 「두개 조선」을 공식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의 본질적 개혁 및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반대급부로 기존의 이중적 대남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남북공존」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남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인 經濟協力을 촉구할 것이다. 남북공존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①남북평화협정 체결 의사 표명, ②남북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 방안, ③상호 체제인정 및 남북공존 천명 등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본 합의서」의 전면적인 이행·실천이 실질적으로 「평화적 이행 전략」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남한측에게 공식 표명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全面 開放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 받으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화해·불가침 분야의 이행에는 동의하되, 교류·협력분야의 부분적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해 점진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남북한의 統一方案을 협의·수렴할 새로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동시에 南北頂上會談의 정례화에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

第 IV 章 結 論

「기본합의서」가 이행·실천되기 시작하면 南北關係는 김영삼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설정한 「화해·협력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은 「기본합의서」 이행에는 호응하지 않은 채 남한의 民間企業과의 경제협력에만 관심을 표명하면서 미국과의 直接協商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오히려 대남비방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정일체제가 단시일내에 기존의 二重的 對南政策을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남북관계가 조기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은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결과 도출된 미·북한간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南北對話에 외형적이나마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망되고, 북한 핵문제의 과거가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처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對北政策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대북정책의 基本 目標를 「남북화해·협력체제 구축」→「남북연합」구성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정치적 신뢰구축」→「교류 협력활성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南北對話와 관련해서 한국은 가시적 성과 도출에 급급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얽매이기 보다는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一貫性을 유지하면서 대화 추진에 주력하여야 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새로운 집권세력에 대해 남북대결이 아니라, 남북공존을 통해서만 북한체제의 존속이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한민족 전체의 공존공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정책은 대외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對外次元에서는 주변4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주변4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國論이 분열된 상황에서 對北 유화론, 강경론이 논란을 거듭하는 상황은 효율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론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國內的 統一基盤을 완비하여 통일국가 의 未來像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구현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 유도 및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가 소멸된 이후 북한의 政治體制는 그 어느때 보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경제체제의 본질적 개혁 없이 「3대제일주의」를 통해 당면한 經濟難을 해결하리라고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外部情報의 유입도 점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민중봉기 또는 군부쿠데타 등 급격한 정치변동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對備策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1~4輯」. 서울: 國土統一院, 1988.
- 남궁영.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員, 1994.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4」. 서울: 대통령비서실, 1976.
-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全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199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1993.
-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통일원. 「통일백서 1992」. 서울: 통일원, 1992.

- _____. 「통일백서 1993」. 서울: 통일원, 1993.
- _____. 「남북한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1993.
- _____.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서울: 통일원, 1994.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Kim, Young C., ed. *Major Powers and Korea*. Silver Spring, Maryland: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
-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2. 論文

- Koh, B. C. "North Korea: Old Goals and New Realities," *Asian Survey*, vol. XIV, no. 1 (January 1974).
- Lee, Chae-Jin. "South Korea: The Politics of Domestic-Foreign

Linkage," *Asian Survey*, vol. XIII (January 1973).

Oh, John K. C. "South Korea 1976: The Continuing Uncertainties," *Asian Survey*, vol. XVI (January 1977).

3. 其他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

통일원. 「1992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분석」 (1993).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로동신문」.

「内外通信」.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
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열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研究報告書 94-1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